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92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 : 김 윤 • 박해철 • 한정애

황정아 · 조인철 · 이기헌

김성환 · 장종태 · 이재강

조 국 · 모경종 · 김남근

오세희 • 박희승 • 김선민

정동영 · 김남희 · 전종덕

문진석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 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 정임.

이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 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거짓 정보 제공 금지 등) ① 의료인은 다음 각 호를 이용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 4.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1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 방법 및 협조의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 <신 설></u> | 제57조의4(거짓 정보 제공 금지 |
| | 등) ① 의료인은 다음 각 호를 |
| | 이용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 |
| | <u>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u> |
| | 거짓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 |
|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u>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u> |
| | <u>른 방송</u> |
|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 |
| | 른 신문·인터넷신문 |
| |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 |
| |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 에 따른 정기간행물 |
| | 4.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 |
| | <u>터넷 매체</u>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
| | 제1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 |
| | 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 |
| |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 |
| | 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③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
| | 기준, 방법 및 협조의 내용, 절 |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 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u>10.</u> (생 략) ② ~ ⑥ (생 략)

| 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
|----------------------------|
| 부렁으로 정한다. |
|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 |
| |
|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
| |
| <u>10. 제5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u> |
|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
| 제공한 때 |
|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
| ② ~ ⑥ (현행과 같음) |